

1.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關한 特例法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제13,649호 1992. 5. 2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산정시기(이하 “가격시점”이라 한다)”를 “가격시점”으로 하고, 동조 제8항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2인이 상의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가 행하며”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이상이 행하며”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여, 동조를 제2조의10으로 하고, 제2조 내지 제2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 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①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2.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7.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8.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9.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1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1.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3.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1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제 2조의2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대상)
사업)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 건설사업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4.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 제 2조의3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차) ① 법 제3조의2제1항 각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보상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이율
 5. 원리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조의4 (채권의 이율 및 상환)
① 채권의 이율은 채권발행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이율과 금융기관이 상환을 보증하는 사채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재무부장관이 관계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상환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 제2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채권발행일 전일까지의 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율과 같은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의 지급시에 이를 지급한다.

제 2조의5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2조의3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제 2조의6 (채권의 발행방법등)
① 채권은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 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중 그 단수가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의 지급시에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채권의 발행일은 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④ 채권은 이를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7 (채권의 취급기관등) ① 채권의 교부 및 상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은행의 본점·지점·출장소 및 대리점이 이를 취급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의 본점·지점·출장소 및 대리점중 당해 채권의 교부 및 상환업무를 취급할 기관(이하 “채권취급기관”이라 한다)을 미리 지정하고, 채권취급기관에 사업시행자의 인감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채권취급기관은 채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채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당해 업무의 책임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발행일 및 상환일
2. 교부일
3. 채권취급기관명

④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보고서를 재무부장관 및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의8 (채권의 사무취급절차등) 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채권취급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는 당해 채권취급결정통지서를 채권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채권을 교부받는다.

제 2 조의9 (채권교부대장의 비치·송부)
채권취급기관은 채권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그 1부를 비치하고, 나머지 1부를 다음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3 조제2항 본문중 “임야대장등”을 “임야 대장·건축물대장등”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성인인 경우 2인이상의 확인서(확인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성인 2인 이상의 확인서(확인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토지등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다

만, 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등 공부상의 자료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조제5항 단서중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을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등의 소유자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토지등에 대한 당해 토지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건설 2백만호 앞당겨진 내집마련